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6일, 소병훈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소병훈 의원)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함. 더불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1,066

명으로 2022년 294명에 비해 262%로 증가했음.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고의적으로 투약 내역 확인을 건너뛸 수 있음. 이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음.

이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 청소년 및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 마약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 현행법 제30조제3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의무적으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음.

- 그런데 오남용 우려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질환에 대한 진단과 과거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사유를 임의로 해석하여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누락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시행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면밀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처방을 예방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향후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그 예외사유도 함께 다양해질 수 있다는 식약처의 의견과 모든 의료현장에서의 예외상황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의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